

2001. 4. ( )

- 第61回 忠州市議會(臨時會) 市政質問 -

# 答辯要旨書

市民生活支援局長

# 질문요지서 목록

연번	의원명	질문요지	소관부서	비고	
	계	2명 / 2건			
1	김대식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뇨정화조 관리(청소)와 관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소여부 확인절차, 청소대행업체 집행사항(대상정화조 현황, 현행법 규 의무사항, 실적)은 무엇인지?</li> <li>· 하수처리지역에서의 적용절차는?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기존 정화조 폐쇄신고, 구조적으로 어려움)</li> </ul> </li> <li>· 수질오염, 악취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?</li> </ul> </li> </ul>	환경미화과		
2	김관수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변구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할 용의는?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변구역 주민을 보호하고 각종규제에서 해제되기 위한 시설물 설치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의 방향과 대책은 마련되었는지?</li> </ul> </li> </ul>	환경미화과		

# 답변요지서

질문의원	김 대식 의원	답변공무원	시민생활지원국장
--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---

## □ 질문사항

### ○ 분뇨정화조 관리(청소)와 관련

- 청소 여·부 확인절차, 청소대행업체 집행사항(대상정화조 현황, 현행법규 의무사항, 실적)은 무엇인지?
- 하수처리지역에서의 적용절차는 ?  
(기존 정화조 폐쇄신고, 구조적으로 어려움)
- 수질오염, 악취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?

## □ 답변내용

### ○ 청소 여·부 확인절차

- 내부청소 시기 도래자 → 안내엽서 발송(1개월전)
- 민원인 청소신청 → 청소대행업체 청소실시
- 매월 대행업체 청소실적보고 → 시 전산입력
- 청소 미실시자 확인 → 독촉엽서 발송

### ○ 청소대행업체 집행사항

- 대상정화조 : 단독정화조 11,044개소, 오수처리시설 517개소
- 의무사항 (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)
  -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연 1회 이상
  - 단독정화조 연 1회 이상

- 청정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단독정화조는 6월  
마다 1회 이상
-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  
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
- 2000 청소실적 : 10,788 개소 (93%)

#### ○ 하수처리지역에서의 적용절차

(기존 정화조 폐쇄신고, 구조적으로 어려움)

- 하수처리구역내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 
연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함.
- 기존 정화조 폐쇄신고
  -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인 수안보 온천리 일대 단독정화  
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폐쇄 가능하여 폐쇄토록 지도  
하고 있으며.
  - 설치위치 또는 배관공사 등 문제로 폐쇄가 어려울 경  
우는 관리기준에 의거 내부청소등 관리를 하여야 함

#### ○ 수질오염, 악취발생에 대한 영향

- 하수처리구역내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  
수차집관에 연결할 경우 수질오염은 없으며.
- 내부청소 미실시에는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기계시설  
등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분뇨가  
방류되어 악취발산 및 해충발생 우려가 있음.

# 답변요지서

질문의원

김관수 의원

답변공무원

시민생활지원국장

## □ 질문사항

### ○ 수변구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?

- 수변구역 주민을 보호하고 각종규제에서 해제되기 위한 시설물 설치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의 방향과 대책은 마련 되었는지?

## □ 답변내용

### ○ 수변구역 현황

- 대상구역 : 가금면, 금가면, 엄정면, 양성면, 소태면
- 지정면적 : 28.877㎢(보조댐 하류 양안 500미터)
- 지정일자 : 1999년 8월 9일

### ○ 주민지원사업 중 · 장기종합계획

- '99년 5개면 연차적 추진계획 수립(2000년 ~ 2005년)
  - 총 사업건수 223건 213억 원
- ※ 면별 수변구역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선정

### ○ 관리 · 운영

- 사업비 배분
  - 기준 : 한강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배분원칙 적용  
→ 주민지원사업비 : 면별 수변구역내 면적, 인구수 기준 배분  
(2000년 29개사업 833백만원, 2001년 41개사업 1,906백만원)

## ○ 향후추진방향

- 충주시 수변구역 중·장기 종합계획에 의거 년차적 추진
  - 오염물질정화사업 : 2000 ~ 2005년 까지 62건 95억원
  - 소득증대사업 : 2000 ~ 2003년 까지 63건 64억원
  - 복지증진사업 : 2000 ~ 2004년 까지 67건 35억원
  - 직접지원사업 : 2000 ~ 2002년 까지 31건 21억원
-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,환경농업의 지원 등 실질적 수질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
- 직접지원사업도 수질개선 관련사업 발굴 년차적 추진

## ○ 향후추진대책

-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마을별 주민회의 개최시 유도하여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어 추진
- 직접지원사업도 환경농업 실천 등 수질개선 관련사업 우선지원 계도
- 주민지원사업 평가를 통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한 마을에 대하여 소득증대,복지증진사업 등 추가지원